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 제도 활성화 〉

■ 이병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0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윤상열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병진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5.
3. 회부연월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 등의 신청 및 영재교육연구원의 판별·심사 절차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 중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영재교육특례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에 대한 안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홍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감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영재교육특례자 선정 제도를 홍보하도록 하고, 영재교육특례자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인재 발굴 및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함)란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며¹⁾, 구체적으로 ①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등에 의해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② 실기검사 등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됨²⁾.

「영재교육 진흥법」 제16조부터 제18조는 특례자 선정(제16조), 특례자 선정에 관한 재심(제17조), 특례자의 전학·배치(제18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6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구체적인 특례자 선정기준과 절차, 특례자의 전학·배치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특례자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2006년 12월 이래 특례자로 선정된 사례는 단 1건(2016년)에 불과하고, 특례자 제도에 대한 안내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1)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란 이 법에서 정한 영재교육대상자 중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① 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에 개정안은 유명무실화된 영재교육특례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자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항).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한국교육문제연구³⁾」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전·현직 시·도교육청 영재교육 정책 담당자 상당수가 특례자 제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외적 홍보뿐 아니라 교육당국 대내적으로도 해당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개정안 제16조제5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특례자 제도의 홍보를 정기화·의무화하는 경우 제도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특례자 선발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홍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바,

직접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보다는 영재교육 정책 담당 부서와 영재교육기관 등에 대한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매뉴얼·지침을 마련하는 등 간접적으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개정안 제5항과 같이 제도 홍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법률 체계상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제42권 제4호(2024) 중 “고도영재 지원 체계의 문제점과 교육적 요구 탐색” 참고

개정안 제16조제6항의 경우 특례자가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특례자 제도에 관한 현행 규정은 선정 절차와 특례자의 전학·배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특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 어떠한 혜택과 지원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여 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 체계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따라서 특례자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는 개정안과 같이 특례자 교육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하여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한 예산 확보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 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영재교육 특례자에 대한 정기적·반복적 제도 홍보 시 선행학습 유도 및 사교육 조장,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유발 및 학교 현장의 업무 증가 등이 우려되어 제도 홍보를 정기화·의무화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아울러,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 영재교육 특례자 사례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도록 선도교육청(2청)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확보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례자

발굴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므로, 특례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법령 개정은 사업 추진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임.

참고로 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출되었으므로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시·도교육청 제출의견

<대구시교육청>

- (안 제5항) 현재 학교에 특례자 발굴과 신청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 시범 사업에 대한 안내도 이뤄지고 있으므로 기존 법령의 이행 절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타 법령과의 비교를 통해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항) 특례자에 대한 지원은 현재 교육부와 영재교육연구원(KEDI 등)이 협의하여 진행하는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역별 편차 없이 동일 수준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 단위로 일원화하여 지원 필요하다고 판단됨

<강원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매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에 대한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특례자 제도」 자체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홍보는 실시하지 않음. 이에 따라, 법률 개정보다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공고 및 안내 시 「특례자 선발」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사전 고지하는 방식으로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임. 이는 기존 행정 체계 내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교육청의 자율성과 지역 여건에 맞춘 탄력적 운영도 병행할 수 있음.
- 또한 대통령령 위임에 의존하기보다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협의를 통해 표준화된 안내 문구 및 절차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전국적인 제도 활성화와 형평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제주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우려에 따라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관계기관 제출의견

<한국교육개발원>

(안 제5항)

- 영재교육 특례자 선정의 본질은 단순한 대국민 홍보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사안이 아니라, 공교육 체제 내 교원의 관찰과 추천을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교육적 맥락에서 발굴되어야 할 사안임. 지나친 홍보는 영재교육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제도 홍보는 현장 교사 및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유발, 학교 현장의 부담 가중, 선행학습 유도 및 사교육 조장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이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도 상충함.
- 현재 우리나라 영재교육 발굴체계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 관찰 기반 추천제, 객관적 다면평가, 공교육 내 학습 경험을 통한 역량 증명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는 개별 학생의 잠재력 발견과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임. 따라서 홍보보다는 교원 및 교육전문가 대상 안내 및 역량 강화가 우선되어야 함.

(안 제6항)

- 제16조는 특례자의 선정 절차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이후 교육과정 상에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 일부 특례자는 전학, 조기입학, 속진 등 단발성 행정 조치에 그치고 있어 지적·정서적·사회적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는 영재의 조기 소진을 방지하고, 공교육 내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에도 중요함.
- 교육적 지원을 보호자와 학생의 의견에 기반하여 설계·운영하도록 명시한 것은 당사자의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필요함. 이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문 의 처

02)6788-5186